#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98 발의연월일: 2025. 4. 21.

발 의 자:이만희·정점식·서명옥

서천호・강민국・서범수

박상웅 · 김기현 · 김종양

조은희 · 서일준 · 최형두

김태호 • 이종욱 • 정희용

이달희 · 이성권 · 구자근

김형동 · 송언석 · 이상휘

신성범 · 임종득 · 박성민

김선교 • 조지연 • 김정재

최은석 • 박대출 • 윤영석

윤한홍 · 김석기 · 강명구

박형수 · 나경워 의위

(3591)

##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이상고온, 강풍, 극심한 가뭄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초대형산불은 기존 산불과 달리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단일 재난을 넘어 복합적·광역적 피해를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진화하고 있다.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북, 경남, 울산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한 초대형산불은 막대한 산림을 소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큰 경제적·사회적 피해도 발생시켰다. 해당 산불은 국내 산불 피해 역사상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특별법은 초대형산불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기존의 법령체 계에서 보호하지 못한 피해를 구제하며,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적인 복 구 및 지역공동체의 재건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 제공 등을 통해 피해지 역의 조속한 회복과 재도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다.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 군·안동군·영덕군·영양군·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김해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이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이라 한다)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를 설치하여 배상, 보상, 피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 다. 국가는 초대형산불 피해 및 복구·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며,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함(안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 라. 피해자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심리상담, 의학적 검사·치료, 근로자 치유휴직 하용 및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함(안 제24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 마. 주택 복구비에 대한 국고 지원 부담률을 70% 이상으로 하고, 소 상공인·중소기업, 산업단지, 농업·임업·수산업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함(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 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납부 기한 연장, 금융부담 완화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함(안 제30 조, 제32조, 제33조)
- 사. 산불고위험지구 지정, AI 기반 산불예측 시스템 구축, 산불위험지도 작성, 대응장비 확충, 구호물품 비축,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산불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함(안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 아. 지역주민의 산불대응역량 강화, 마을순찰대 운영, 산불대응기술 연 구개발 지원 등 지역사회 참여형 예방체계를 구축함(안 제49조, 제5 0조, 제51조)
- 자. 위험목 제거, 산불진화임도사업, 산림경영특구 지정, 산림 투자선 도지구 운영, 공동영농모델 지원 등을 통해 피해지역 산림을 회복 하고 활용함(안 제53조~제60조)
- 카.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 설치, 국고보조율 상향, 지방교부세 특례 적용, 증액교부금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피해지역 재건을 지원함(안 제62조~제66조)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 북도 의성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김해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경북· 경남·울산 초대형산불이라 한다)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 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며, 지역 경제 회복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정주환경 혁신과 공동체 기반 재구성, 산림관 리체계 효율화와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피해지역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이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김해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을 말한다.
- 2. "피해지역"이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재난

-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 거나 이 법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경북· 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
  - 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서 사업장 운영, 근로활동 또는 학업수행 등을 하고 있던 자
  - 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자
  - 라. 그 밖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 체류 중이었던 자 등 피해지역과 관련이 있는 자
- 4. "지역재건"이란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물리적 복구를 넘어 정주환경 개선, 공동체 회복,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위기 대응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포괄적 복원 및 발전 과정을 말한다.
- 5. "산불고위험지구"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 위험이 큰 지역으로서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이 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 6. "채취 임산물"이란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거나 산림에서 채취되는

임산물로서 송이, 능이 등의 버섯류와 수액 등 임산물을 말한다.

- 7.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 8. "임시주거시설"이란 초대형산불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임시거주공간으로, 피해자의 사용 후 마을 공동시설, 관광 숙박시설,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등 지역 활성화 용도로전환・활용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9. "산불폐기물"이란 초대형산불로 인해 발생한 생활폐기물, 건물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말한다.
- 10. "복합기능 집적지구"란 주거, 상업, 공공서비스 기능이 밀집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구조를 갖추며, 에너지 효율과 기후회복력이 강 화된 도시구조를 갖춘 지구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회복과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해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 ③ 국가 등은 피해자와 피해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한다.
  - ④ 국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

- 런 법령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규제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국가 등은 피해지역 산림의 효율적 관리와 재건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산림 관련 업무와 권한의 합리적 분담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 ⑥ 국가 등은 미래 재난에 대비하여 구호물품 비축, 재난대응장비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사전 예방 및 대비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한다.
- ① 국가 등은 AI 기반 산불예측시스템 구축, 산불고위험지구 지정· 관리, 주민대피훈련 등 첨단 재난대응체계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에 관련된 피해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보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장 배상 및 보상 등

제5조(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 ① 국가가 재해를 예방 및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확인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경남·울

- 산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제8조 및 제18조, 제19조에 따른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2. 제16조에 따른 임시지급에 관한 사항
- 3.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4. 피해유형별 지원사업 간 조정 및 중복 방지
- 5. 지방소멸 방지 및 활성화 사업 심의
- 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반기별로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매년 종합적인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성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 3. 보건·의료·복지·고용 등 피해자와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4. 배상 및 보상업무, 산림재해, 심리상담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피해자 대표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 ③ 위원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자나 피해자 등 이해관

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 1.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업장 운영, 근로 등의 생계활동에 피해를 입은 사람
  - 2. 그 밖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의 복구 및 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
  - ② 제1항의 보상금의 기준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과 제1항 각 호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제8조, 제18조 및 제19조의 배상금·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 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이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10조(신청인의 진술권)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배상 및보상 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1조(지급결정)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 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가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재심의) ①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
-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①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결정서정본(재심의 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 ② 신청인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위원회에 하지

- 않은 경우 이 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위원회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 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 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16조(임시지급 및 정산)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18조제3항에 따른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결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③ 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및 「민법」에서 정한이율에 따른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지급받은 날부터 배상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까지의 이자는 제외한다.
- 제17조(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국가는 제11조의 지급 결정 및 제16조의 임시지급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다.
- 제18조(배상금 지급) ① 배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 2. 국가가 제1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위
- ② 국가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신청인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임시지급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 50%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위로지원금 지급)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피해 의 정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장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지원

- 제20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 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② 국가 등은 피해자가 신체적 ·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③ 국가 등은 피해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각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1. 개인피해: 주거, 생계, 건강, 심리, 교육 등
- 2. 사업피해: 영업, 시설, 설비, 재고, 건물, 사업장, 공장, 창고, 기자 재 등
- 3. 산업피해: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관광업 등
- 4. 고용피해: 실직, 휴직, 임금 감소 등
- 5. 공동체피해: 공공시설, 마을 공동시설, 문화유산, 의료시설 등
- 제21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 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해 야 한다.
- 제22조(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재건 및 활성화 지원) ① 국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재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한다.
  - 1. 산불피해복구 특별회계 설치, 교부금 증액, 지방교부세 가산
  - 2.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례, 보조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등
  - 3. 피해지역 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피해지역에 대한 개발·정비 지원) ① 국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피해지역의 농지·산림·정주여건 등의 조 속한 개선을 위하여 규제완화 및 권한이양 등 다음 각 호의 특별대 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 농지 · 산지 전용허가, 하천정비 권한 등 관련 특례 적용
  - 2. 특별재난지역 내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권한 이양 등
  - 3. 피해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관광단지 조성 등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 4. 생태보전지역, 문화유산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과 권한 이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주거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 하 "주거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1. 주거지원금: 피해자의 주거 보조에 필요한 비용
  - 2.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 3.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 4. 교육비 지원금: 피해자녀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비용
  - 5. 장례비 지원금: 사망자 장례에 필요한 비용

- ② 노인,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가산하고,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선 지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주거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④ 주거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주거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국가 등은 피해지역 내 신속한 주거공급을 위하여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은 피해자가 임시거주용으로 사용한 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1. 마을 공동시설(공동 작업장, 농산물 판매장, 주민 복지시설 등)
- 2. 농어촌 체험시설 또는 관광 숙박시설
- 3.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 4.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공간
- 5. 관광・문화・휴양시설
- 6. 그 밖에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의 규정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설치, 활용, 전환 및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 등에 관한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 주택의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 또는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초대형산불재난 발생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무허가건축물 포함)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복구비에 대한 국고 지원의 부담률은 70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개축·수리의 기준 및 국고 지원의 부담률 등 주택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지방소멸과 마을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수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피해자의 생활 여건 및 지역 특성 반영
  - 2.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 3. 친환경적 설계 및 재난 대비 안전성 확보
  - 4. 각종 편의시설 및 공동체 시설 설치
  - ⑤ 공동주택단지 조성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 제한, 건폐율, 용적

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1.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공동주택 건립 허용
- 2. 건폐율, 용적률 상향 적용(기준의 1.5배 이내)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세부적인 조성 방법, 규모,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 절차, 지원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발생한 사업장 건축물·시설물 등의 재산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 등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 등은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부지 및 사업장 건축물ㆍ시설ㆍ설비ㆍ자재 처리 및 복구
  - 2. 원자재 및 제품 손실 보상
  - 3. 사업장 기계・장비・생산・유통・가공시설 복구 지원
  - 4. 경영안정자금 융자

- 5. 영업결손 등에 대한 보전
- 6. 피해시설물 철거
- 7.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 8.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 9. 업종 전환 지원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4호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저금리 직접융자와 이자차액보전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자지원과 관련한 소요재원은 국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피해지역을 지정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⑥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위 기지역으로 피해지역을 지정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범위, 산정기준 및 지원 금 결정기준, 지원의 요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산업단지 및 공단 피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업단지 및 공장의 기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복구

- 2. 공동이용시설 복구 및 확충
- 3. 입주기업 공동 물류 · 유통 지원 사업
- 4. 산업단지 및 공단 내 에너지 효율화 시설 설치
- 5. 스마트 및 안전 인프라 조성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산업단지 및 공장의 복구 과정에서 첨단화, 친환경화,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중소기업의 영업결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피해 시설의 복구를 위한 시설복구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28조(농업·임업·수산업의 피해 복구 지원) ① 국가는 경북·경남 ·울산 초대형산불로 발생한 농업·임업·수산업에 대한 시설·장 비(농기계 등) 및 작물(임산물 등 채취 작물을 포함한다)의 피해 복 구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 등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농림어업인에 대한 생산기반복구 및 소득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농림어업인에 대한 임지, 농경지, 과수원 등 생산기반 복구 지원
  - 2. 농림어업용 기계 · 장비 · 어선 · 어구 · 양식시설 지원
  - 3. 농림수산물 생산・유통・가공시설 복구 지원
  - 4. 대체수종, 대체작물 재배 및 양식업 전환 지원

- 5. 피해 어가 중 어선어업에 대한 특별감척 지원
- 6. 농어업 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률 특별 경감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하여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9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주택이소실된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제4항의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긴급돌봄센터를 1회이용 시 30일 이내, 1년 기준 최대 12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제30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 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1. 사증 발급절차
  - 2. 체류자격의 변경
  - 3. 체류기간의 연장
  - ③ 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한다.
- 제32조(조세감면 및 납부 유예) ①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지역 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감면 또는 면제
  - 2.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감면 또는 면제
  - 3. 세금 납부 기한의 3년 이내 연장

- 4. 분할납부 허용(최대 3년)
- ②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지역에 창업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각 호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2.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 3. 재산세 감면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용 세목 및 감면 요건, 절차 등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33조(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에 법정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1. 사업 선정 시 우선 순위 부여
  - 2.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
  - 3. 별도 사업 물량 배정
  - 4. 자부담 비율 완화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
- 제3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 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 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 및 주민 심리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1. 문화축제. 예술제. 체육행사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 2.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활용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 3.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보건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연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
  - 4. 주민 주도형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지원
  - 5. 그 밖에 지역사회 회복에 필요한 프로그램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피해지역 내 관련 기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공모사업 추진 시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평가 점수의 일정 부분을 가점으로 부여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 제3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피해자인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 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지구 조성) ① 피해지역은 공동 체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

- 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지역 주민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
- ③ 국가는 피해지역이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체계적인 복구 및 지속가능한 지역재건을 위하여 복합기능 집적지구를 조성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는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1.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 재배치 및 고밀도 개발 구역의 지정
- 2. 생활권 기반 교통ㆍ에너지ㆍ환경 인프라의 통합 개발 방안
- 3. 고령자 및 재난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정주 여건 확보 방안
- 4. 기후위기 대응형 건축 및 도시 설계 기준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의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및 주택·생활편의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9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회복과 재난대응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추모공원의 조성
  - 2. 추모비의 건립
  - 3. 재난 피난시설의 설치 및 운영
  - 4. 그 밖에 위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사업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모공원 및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③ 추모시설의 위치는 피해지역 내 주요 참사 현장 인근으로 하되, 지역 주민과 유족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학교보건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인허 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40조(산불진화 등 공무수행사망자 지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의 진화작업, 인명구조, 산불 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사망한 공무원 외의 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

무수행사망자로 인정될 수 있고,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제4장 산불 예방 · 대응 및 산림회복

- 제41조(산불고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고위험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는 대응장비, 감시시스템, 예방교육 등을 우선 배치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고위험지구로 자체 지정할 수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② 산불고위험지구 지정은 3년마다 재평가하여 갱신하며, 지정 기준, 관리 방법 및 지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산불고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 1.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장비 및 인력 지원
  - 2. 산불 위험 저감을 위한 산림 정비 및 관리 지원
  - 3. 주민 대피시설 및 대피로 구축 지원
  - 4. 산불 예방을 위한 임도시설
  - 5. 그 밖에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고위험지구 내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2조(산불예측 및 대피체계 고도화) ① 국가는 인공지능(AI) 기반 산불예측 시스템과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주민경보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봄·가을 산불 조심기간 각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산불 발생 시 풍속에 따른 대피 기준을 포함한 표준 대피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대피 매뉴얼을 수립·운영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시간당 산불 확산 속도를 고려한 사전 대피 범위(최소 10km 이상)
  - 2.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대피지원 방안
  - 3. 산불 방향 및 풍속에 따른 단계별 대피 요령
  - 4. 마을별 대피 경로 및 대피소 지정
  - 5. 강풍 시 이격거리 확대 기준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국가는 민간 기술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예측 정확도를 개선하고, 관련 기술의 지방자치단체 이전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민관 협력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예측 및 대피체계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제43조(산불위험지도 구축 및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산불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권 중심의 '마을 산불위험지도'를 작성・활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산불 이력, 경사도, 식생 등 산림 중심 정보
  - 2. 고령자 비율, 대피소 접근성, 통신 음영지역, 민감시설 등 생활권 기반 정보
  - 3. 마을 단위 대피 우선순위 설정 및 위험등급 분류
  - ② 마을 산불위험지도는 재난대응 매뉴얼, 자원 배치계획, 재난문자시스템 등과 연동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제44조(산불대응체계 전환 시범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불대응체계의 혁신과 피해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시범사업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 1. 산불 조기감지 및 예측 시스템 운영
  - 2. 야간 산불 진화장비 및 드론 등 첨단 대응기술 적용
  - 3. 재난 회복형 임시주거지 및 정착촌 조성
  - 4. 주민 참여 기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 5. 산림ㆍ농경지의 통합적 복구 및 생태적 회복 모델 적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각종 특례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있다.
  - ④ 시범사업의 지정 절차, 운영 방식,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장비·시설 등 지원) ① 국가는 산불예방과 효율적 진화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장비 구입·임차 비용 및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1. 감시시스템을 활용한 산불 감시 인프라 구축
  - 2. 대형 산불진화헬기, 다목적산불진화차량, 무인감시카메라, 야간 진화장비 등
  - 3. 진화대원 방염복등 개인 진화장비 등
  - 4. 산불 대응을 위한 '남부권 국립 산불방지센터' 경남지역 설립
  - ② 국립공원을 포함한 산림피해지역의 복구 및 산림관리 등을 위한 임도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비지원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대응장비 및 인프라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 진화가 어려운 강풍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장비를 개발·도입하여야 한다.
  - ② 대응장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운영하며, 장비 운영 현황과 성과는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개선한다.
- 제47조(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의류, 생필품, 침구류 등 구호물품을 사전에 비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호물품의 적정 비축량, 관리

- 기준, 보관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호물품을 지역별로 적정하게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 1. 의류 및 침구류
- 2. 위생용품 및 생활필수품
- 3. 재난 대비 비상식량 및 식수
- 4. 응급의약품 및 의료용품
- 5. 그 밖에 재난 구호에 필요한 물품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구호물품을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는 공급망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비축 구호물품의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물품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호물품의 비축·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호물품의 비축·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재해예방시설 설치) ① 산불 또는 산사태 피해지역에 대한 재 난복구계획 수립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 46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일정규모 이상의 산사태 위험구역에 대한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 2. 주거지역과 산림지역 사이의 완충지대 조성

- 3.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산사태 위험구역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산불대응역량 강화 및 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 민의 산불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대응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산불대응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는 주민, 단체, 기업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대응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매년 평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제50조(마을순찰대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산사태 등 재난 발생 우려 시 주민 대피 지원 및 초기 대응을 위한 '마을순찰 대'를 운영할 수 있다. 이 조에서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포함한다.
  - ② 마을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재난발생 시 마을 주민 대피 지원
- 2. 산불 발생 초기 상황 보고 및 고립 주민 확인
- 3. 재난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 특별 관리 및 지원
- 4. 마을 단위 재난 예방 활동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대응 활동
- ③ 마을순찰대는 이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순찰대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1. 교육훈련 및 장비 지원
- 2.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3. 보험 가입 지원
- 4. 그 밖에 마을순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⑤ 마을순찰대 활동 중 재난대응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포상 또는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마을순찰대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산불대응기술 연구개발 지원) ① 국가는 산불 예방, 조기 발견, 효과적 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산불예측 및 확산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 2. 산불 조기 감지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 3. 산불 진화 장비 및 기술 개발
- 4. 산불 피해 최소화 및 복구 기술 개발
- 5. 그 밖에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
- ③ 국가는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산불폐기물 처리 등) ① 국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해 발생한 산불폐기물(생활폐기물, 건물폐기물 등)의 처리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비 등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공사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복구 지원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3조(위험목 제거사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형산불·산사태 등 피해지역의 위험목 제거사업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 시행 후 즉시 산림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산림 소유자가 부재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1. 산림 소유자의 최종 주소지로 사업 시행 사실 통지
- 2.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
- 3. 공고 기간 경과 후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 및 방법, 보상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조(산불진화임도사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불·산사태 등 산림의 피해지역 내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의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산불진화임도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시행 후 산림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산림 소유자가 부재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1. 등기부등본 상 산림 소유자의 주소지로 사업 시행 사실 통지
  - 2.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산림 소재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

- 3. 공고 기간 중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불진화임도사업의 절차 및 방법, 보상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5조(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산림을 활용한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산림 경영특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특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 2. 마을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협업경영 및 관리 조직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협업경영조직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특구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지역 맞춤형 소득수종 조림사업지원
  - 2. 산림경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 3.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사업 지원
  - 4. 생산물의 가공・유통・판매 지원
  - 5. 협업경영조직의 운영 및 관리 지원
  - 6. 협업경영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
  - ④ 산림경영특구로 선정된 경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

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경영특구의 요건, 지원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산림 투자선도지구) ① 지방자치단체는 산림 투자선도지구를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구에는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 1. 인허가 의제 처리 및 절차 간소화
  - 2. 지방세 감면 및 재정 지원 우선 배정
  - 3. 기반시설 우선 설치 지원
  - 4. 토지 수용 및 사용에 관한 특례
  - 5.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례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기준, 절차 및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7조(산불재난지역 공동영농모델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 내 농경지, 과수원 등의 효율적 복구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공동영농모델을 지원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영농모델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 1. 농림어업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영농조합법인
  - 2. 마을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공동경작 및 관리 조직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공동영농조직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영농모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공동경작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 2. 공동생산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지원
- 3. 공동영농조직의 운영 및 관리 지원
- 4. 공동영농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영농모델의 요건, 지원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8조(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산림 회복과 활용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계 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1. 산림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확보 방안
  - 2. 산림자원의 순환적 이용 체계 구축 방안
  - 3. 산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4. 산림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방안
  - 5. 4차 산업 기반 스마트 산림, 관광 및 레저 시설 개발 방안
  - 6.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활용 방안
  - 7. 공공주도 지역상생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방안
  - 8. 탄소흡수원, ESG 기반 산림사업, 바이오자원 생산지 조성 방안
  - 9. 산악스포츠(그란폰도, 패러글라이딩 등) 대회 개최 및 시설 조성 방안
  - 10. 그 밖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 활용 방안

- ②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을 탄소흡수원, 바이오자원 생산지, 산림관광지, 레저시설, 4차 산업 기반 스마트산림 등으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회복 및 활용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안정적 재원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59조(지역주도형 산림복원 및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생태적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
  - 1.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공익(관광)시설의 설치
  - 2. 지역주민의 생활기반 복원과 관련된 시설 개선
  - 3. 산림 관광 자원화 및 소득 창출 사업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이 법에 따라 승인된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비가 사용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 의무는 면제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원 및 활용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이익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구계획의 수립·승인, 보조금의 사용, 면제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산림소득 분야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취 임산물(송이, 능이, 수액 등) 및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 목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보조할 수 있다.
  - ③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은 임업경영 회복을 위 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계속 지급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보상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1조(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확대하여 우선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국

고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율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국고보조율,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재정·행정 지원 및 특례

- 제62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이하 "특 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른 예비비
  -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피해자에 대한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
  - 2. 주택・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복구
  - 3. 산림 복구, 복원 및 관리
  - 4. 지역경제 및 산업 활성화 지원
  - 5. 관광・문화・스포츠 시설 복구 및 확충
  - 6. 산불대응장비 및 인프라 확충
  - 7. 그 밖에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에 필요한 사업

- ④ 특별회계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10년간 운용하며,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⑤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3조(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교부세 특례) ① 국가는 피해지역에 시행되는 복구 및 재건 사업(제25조에 따른 주택 복구 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고보조율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자연재난 수준 또는 그 이상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복구 및 재건 사업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 복구 및 재건 지원 비율을 100퍼센트 까지 상향할 수 있다.
  - ③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다음 각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 1.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사목에 따른 재해복구 대응 수요산정액 시 가중치 부여
  - 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사목에 따른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 산정 시 현금성 복지 지출 결산액 제외
  - 3. 특별교부세 우선 배정(연간 기준액의 20퍼센트 이상)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교부세 특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5년간 적용한다. 다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수 있다.
- ⑤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4조(증액교부금 지원) ①「지방교부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의 재정상 부득이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와는 별도로 증액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증액교부금은 피해규모, 복구비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그 규모와 산정 기준, 교부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증액교부금을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 신속하게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증액교부금을 지역실정에 맞게 우선 배분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액교부금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5년간 교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65조(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에 있어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배분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선 배 분한다.

- ② 피해지역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재건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 ③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우선 배분 특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10년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 배분 가중치, 배분 비율, 사용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유예) ① 피해지역 내 도시계획, 산림개발, 건축, 하천정비, 신재생에너지, 관광단지 조성 등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 2.「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 3.「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 4.「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절차 간소화
  -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절차 간소화
  -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문화유 산 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 절차 간소화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허가 절차
  - ② 생태보전지역, 문화유산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제한 완화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내 행위 제한 완화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 완화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소화 및 규제 유예는 경북·경남·울 산 초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5년간 적용하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간소화 및 유예 적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7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6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장 보칙

제69조(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① 국가 등은 재난구호 및 추가 피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인력·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 이에 소요된 경 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

- ②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 제8조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 2. 제9조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
- 3. 제1항에 따른 선지급금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이후 복구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 제70조(중복지원 제한)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7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2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제73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74조(배상금 등의 환수) ① 국가 등은 이 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주거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해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7장 벌칙

- 제75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적 지급 또는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
  - 2. 제18조와 제19조에 따른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 3. 제24조에 따른 주거지원금등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1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
- 2.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한 사람
- 3.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